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2. 19 선고 2018가단4864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1. 주식회사 D

2. E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노계성, 김성재

변론 종결 2020. 11. 27

판결 선고 2021. 2. 19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,645,769원 및 그 중 67,313,811원에 대하여 2018.5. 26.부터 2018 . 9. 14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2019 . 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,645,769원 및 그 중 67,313,811원에 대하여 2018. 5.26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 주식회사 이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은 2016. 9.경 서울교통공사와 사이에,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피고 회사가 고객들에게 F 대여서비스 (이하 '이 사건 서비스'라 한다)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'주계약'이 라 한다).

주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1) 피고 회사는 역사 내 서울교통공사가 제공하는 장소에 F의 무인대여기를 설치 한다.
- 2) 피고 회사는 매달 발생하는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의 30%를 수익금으로서 서울교통공사에게 지급한다.
- 3) 피고 회사는 주계약 이행 보증금으로 서울교통공사에게 67,313,811원을 납부하 되, 현금 지급을 갈음하여 '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' 제37조 제2항 각 호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.
- 4) 주계약기간은 이 사건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- 5) 피고 회사가 그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교통공사는 피고 회사에게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, 피고 회사가 위 최고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교통공사는 주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.

이 경우 피고 회사는 서울교통공사에게 위약별로 위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한다.

나. 피고 회사는 주계약 이행 보증금 납부를 위해 2016. 9. 9.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서울교통공사로, 보험가입금액을 위 보증금액으로 하는 이행(계약)보증보험 약 정을 체결하고, 원고로부터 그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서울교통공사에게 제출하였다.

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)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주계약이 해지된경우 원고는 서울교통공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.

2)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면,피고 회사는 즉시 원고에게 그 지급금액을 상환하 여야 하고,지체 시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.

그 지연손해금율은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다 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이고,그 다음날부터는 연 9%이다.

다.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위 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 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라. 피고 회사는 주계약에 따라 2016. 11.경 이 사건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,2017.11. 30.경 이 사건 서비스를 중단하였다.

마.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3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서비스 재개를 요청 하였으나,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,이에 서울교통공사는 2018. 2. 23.경 주계 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.

바. 서울교통공사는 2018 . 3. 21.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서비스 중지로 인한 주계약 해지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, 2018 . 4. 25. 원고로부터 보험금 67,313,811원을지급받았다.

[증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2, 3, 4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 금으로 위 67,313.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은, 이 사건 서비스 중단은 서울교통공사의 주계약상 의무(수익 창출에 협 조할 의무,비용 부담 의무 등) 해태로 당초 서울교통공사가 보장하였던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데에 그 원인이

있으므로,이 사건 서비스 중단이 전적으로 피고 회사 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위약벌
부과는 부당하고,따라서 서울교통공사 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
피고들에 대한 구상 청구 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서울교통공사가 주계약상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으므로,이를 전제로
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,645,769원(= 원금 67,313,811원 + 이에 대 하여
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이 되는 2018. 5. 25.까지 약정에 의한 연 6%의 비 율로 계산한
지연손해금 331,958원) 및 그 중 원금 67,313,811원에 대하여 2018. 5.26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
최종송달일인 2018. 9. 14.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9%의,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
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
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로,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
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 는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박현경